

#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한석\*\* · 도근영\*\* · 조용수\*\*\* · 이정재\*\*\* · 김나영\*\*\*\*

\*\*한국해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건축학부 석사과정

## A Study on Improvement of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s in Busan City

Han-Seok Lee\*\* · Geun-Young Doe\*\* · Yong-Soo Cho\*\*\* · Jurng-Jae Yee\*\*\* · Na-Young Kim\*\*\*\*

\*\*Professor,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Professor,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Graduate School,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를 분석하였으며 먼저 연안의 경관관리에 앞서 가는 미국과 일본 연안 도시에서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와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관리체계 내에서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안의 경관은 육지 경관과 바다 경관이 어우러져 구성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측면에서 보다는 연안관리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안관리법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연안경관관리조례를 만들어 구체적인 연안의 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안의 경관 특성에 따라 연안경관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 경관보전지구, 경관회복지구, 경관계획지구를 두어 지구별로 관리하며 지역의 경관종합계획과 지구별 경관계획지침을 세워야 한다.

**핵심용어** : 연안 경관, 연안의 경관관리,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연안 관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new systems for improvement of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in Busan area. The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s in Busan are divided into urban planning sector, coastal management sector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sector without any comprehensive law or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oastal landscape is in need of integrated management in the form of coastal management rather than urban planning because coastal landscape is different from urban landscape by nature. The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ordinance which is based on the Coastal Management Act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special zoning system for costal landscape management is to be set up under this ordinance. Then the comprehensive landscape plan for Busan coastal area and the design guidelines for each zone are mandatory. Also Busan city government and the district office must have a responsible department, experts and coastal landscape review committees.

**Key words** : Coastal landscape,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s, Coastal management

### 1. 서 론

연안은 도시 경관과 달리 바다를 중심으로 특별한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안의 경관에 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산에서는 현재 연안의 경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안의 경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

는 형편이다.

따라서 부산 연안에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의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부산 연안의 경관은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이 복합된 경관으로서 육역에서 보이는 해역의 풍경과 해역으로부터 보이는 육역의 풍경이 일체가 되어 해안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안의 경관관리는 연안 환경의 시각적 질과 관련하여 독특하고 개성 있는 경관자원을 찾아내어 평가·보전·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이 조성되는 연안의 경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안의 경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의 기본이 되는 경관관리제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란 국가나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지정 동아대학교 지능형통합항만관리 연구센터의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 종신회원, hansk@hanara.kmaritime.ac.kr, 051)410-4581  
\*\* 종신회원, gydoe@hanara.kmaritime.ac.kr, 051)410-4583  
\*\*\* yscho@daunet.donga.ac.kr, 051)200-7614  
jjyee@mail.donga.ac.kr, 051)731-0333  
\*\*\*\* na02@kmaritime.ac.kr, 051)410-4581

연안에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법규, 조례, 계획, 사업, 정책, 조직 등 일체의 행정적 조치와 시스템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연안의 경관관리범위는 바다의 주요 조망점으로 부터 시선이 미치는 육역의 범위와 육역의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보이는 바다의 범위로서 해안선에서 보이는 주로 근경(近景)의 영역이다. 구체적인 연안의 경관관리범위는 각 경관지구 별로 해상(海象), 지상(地象), 기상(氣象) 등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해안선을 중심으로 시각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육역과 바다의 범위로 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연구진행은 먼저 연안의 경관관리에 앞서 가는 미국과 일본 연안도시에서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와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관리체계 내에서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2. 외국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분석

### 2.1 일본 연안도시

일본의 경우 연안의 경관관리가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도시에 인접한 연안이 물류나 생산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던 1980년경부터이다.

도쿄에서는 1994년 3월에 만든 도시경관마스터플랜에 근거하여 경관 행정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전개해 가기 위해 도쿄도경관조례(東京都景観條例)<sup>1)</sup>를 1997년 12월에 제정하고 여기에 경관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도쿄도경관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도쿄도경관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경관조성기본방침을 정하여 도쿄 경관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도쿄의 연안의 경관관리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관조성기본방침에 따라 해역 및 육역을 임해경관기본축으로 지정하여 공공사업이나 건축·토지개발 등을 행하는 사업자 또는 도시계획이나 도시조성에 관계하는 자치단체, 기업, 주민이 사업이나 개발을 실시할 때 경관조성기준에 따라 연안의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임해경관기본축 내에서 특정 행위를 행하는 사업자는 경관에 대한 고려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지 일부가 경관기본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신고를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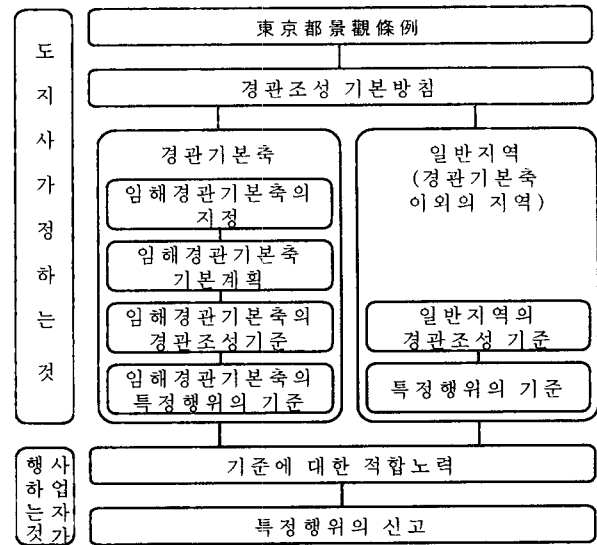


Fig. 1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s in Tokyo<sup>2)</sup>

임해경관기본축의 범위는 바다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경관이나 도시에서 바다를 보는 경관에 영향을 주는 지역범위, 바다와 역사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지역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고 있다.

#### 2) 오사카(大阪)

오사카의 연안의 경관관리는 Fig. 2와 같이 오사카부경관조례<sup>3)</sup>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이 경관조례는 오사카부환경기준조례(大阪府環境基準條例)의 이념에 따라 도시경관, 역사적 경관 및 자연경관의 창조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오사카부경관조례(大阪府景観條例)에 따라 경관형성기본방침을 세우고 이것에 근거하여 특별히 경관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에 대해서 경관형성지역을 지정하는데 그 지정대상으로서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연안의 경관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경관형성지역에서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경관지도기준<sup>4)</sup>을 정하여 구체적으로 경관을 관리한다.

#### 3) 고베(戶神)

고베시 연안의 경관관리는 Fig. 3에서 보면 일본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경관조례를 근간으로 이루어지지만 고베시의 특별한 점은 조례에 의해 마스터플랜의 성격을 갖는 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고베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형성되어야 하는 지역을 도시경관형성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경관을 관리한다. 특히 항만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구를 구분하여 항만지경관형성계획을 세워 항만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도

1) 東京都條例 89호, 1997년

2) 東京都景観條例 東京都臨海景観基本軸, 1997년

3) 大阪府條例 제5호, 1994년

4) 높이 20m를 넘거나 건축면적 2,000㎡를 넘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 경관지도기준에 근거하여 행정지도를 하는데 경관지도기준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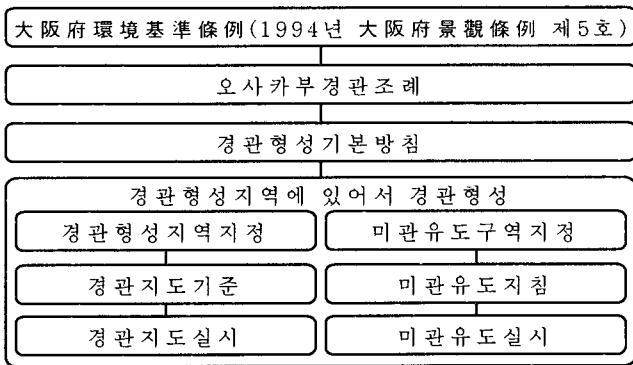


Fig. 2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s in Osaka<sup>5)</sup>



Fig. 3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s in Kobe<sup>6)</sup>

시경관형성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건축행위나 대규모 개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조언·유도를 통해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그밖에 경관관리제도로는 경관형성지정건축물의 지정이나 주요건축물지정, 경관형성시민단체에 의한 관리, 도시경관심의회, 경관형성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관기금, 경관형성에 기여한 건축행위 표창 등이 있다.

2.2 미국 연안도시

1) 뉴욕

뉴욕의 경관관리제도는 일반적인 조닝(zoning)제도를 바탕으로 하되 해당 지구 내에서 물리적 환경의 특별한 준비를 시

행하기 위해 특별조닝지구(special purpose district)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별조닝지구에서는 그 지역만이 가지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구마다 각기 다른 원칙 하에 상세하고 독특한 규제내용을 지침으로 정하고 이를 조례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뉴욕시의 연안의 경관관리와 밀접하게 관계된 제도로는 워터프론트정비계획과 특별조망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워터프론트정비계획 (New York City Comprehensive Waterfront Plan)

이 계획은 1993년 뉴욕시 주변의 워터프론트를 정비하기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으로서 자연수변공간, 공공수변공간, 산업수변공간, 재개발수변공간의 네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목적에 맞는 관리전략을 체계화하였다. 이 계획에서 보면 연안의 경관관리는 주로 공공수변공간과 자연수변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개발수변공간에서는 향후 재개발시에 연안의 경관을 고려한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② 특별조망지구(Special Scenic View District)<sup>7)</sup>

뉴욕의 특별조망지구는 공원, 해안산책로, 기타 공공장소 등에서 경관조망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이 지구 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특별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건축물이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경관조망면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닝 맵(zoning map)에 표시된 공원, 해안산책로, 일반시민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바라보는 수려한 경관조망을 보존·보호하고 조망차폐를 방지하며 토지이용과 건축개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조닝조례에서 특별조망지구를 지정하는데 이 지구에서 정의하는 경관조망은 다음과 같다.

- ① 멀리서 바라 본 언덕, 벼랑 또는 기타 자연적 요소들의 장대한 풍경
- ② 강, 내, 호수, 항만, 폭포 등의 아름다운 수경
- ③ 워터프론트에서 바라본 인공요소와 자연요소로 구성되는 스카이라인

이러한 조망을 관리하기 위해 가상의 면(view plane)을 설정하고 이를 조례에 도면 등으로 명기하여 인공물이 이 면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연안의 경관관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2)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도시경관관리를 위해 내부행정지침으로 도시디자인계획(Urban Design Plan)을 정비하였다<sup>8)</sup>. 따라서 샌프란시스코의 연안의 경관관리는 이 도시디자인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도시디자인계획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5) 大阪府景観條例  
 6) 神戸市都市景観條例  
 7)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Ⅲ),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8)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Ⅲ),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p.15

환경의 디자인 측면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디자인계획으로서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이 계획에서는 시가 추구하는 물리적 환경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서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 상세한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시내의 주요 지역에 대해 수립한 지구차원의 계획에서도 도시디자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역의 고유한 경관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지구차원의 계획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도 사업단위로 디자인 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사업에서 지켜야 할 디자인 요소에 대한 지침이 설정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연안의 경관과 같이 특정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지는 않지만 도시 내 모든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디자인 측면을 관리하여 경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구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디자인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시가지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연안의 경관조망을 도시 전체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 모양의 구릉지에는 경사지 모양의 건축형태로 하고 바다로의 조망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언덕 위에는 고층화를 허가하지만 산 중턱이나 해안선에는 고층빌딩 등을 건설하지 않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sup>9)</sup>.

### 3) 하와이

하와이의 경관관리는 지역종합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해안선관리계획 등과 함께 미국 내에서도 가장 정비가 잘된 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규제는 자세하며 용도지역구분(zone)과 그 세부구분으로서의 지구(precinct) 그리고 특별지구(district)가 설치되어 디자인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특별히 연안의 경관 관리에 직접 관련된 제도로서는 해안지역 관리규제와 연안의 경관관리제도가 있다.

#### ① 하와이 해안지역 관리규제

하와이에서는 관광지로서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해안지역의 자연적인 특징과 독특한 조망이 확보되도록 다이아몬드헤드(Diamond Head)지구와 와이키키지구에서 건축물을 규제하고 있다. 각 지구의 규제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Hawaii Land Use Ordinance<sup>10)</sup>

규 제 지 구	규 제 내 용
다이아몬드헤드 지구의 고도규제	· 도로 및 해변, 공원, 학교 등 공공 조망점에서의 전망 보호, 자연적인 외형보존 · 건축불가 지역과 25feet 고도규제지역으로 구분
와이키키지구의 건축물규제	· 해안선에서 100feet 건축선 후퇴 · 마우카마카이(Mauka-Makai)의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마우카마카이 방향으로 건축물이 입지하도록 함

#### ② 하와이 경관관리제도<sup>11)</sup>

특별한 상징경관을 위해 와이키키에는 다이아몬드 정상이나 펀치볼 묘지 방향으로 뷰콘(view cone)이라 불리는 규제가 정해져 있다. 이것은 원추상의 건축규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상징경관의 실루엣이 항상 도시에서 보이도록 그 시야의 범위 안에 있는 건물 등의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즉 건물이 조망을 위해 물러나 자연경관이 돋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수단이며 상대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와이에서는 해안선이 경관과 관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관광개발자의 리조트호텔에 의한 해변 점유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먼저 해안선 특히 해변으로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의한 매수도 제도화되어 있다. 그리고 1970년에는 주평의회에서 만조시 해수면에서 20~40야드(18.28~36.56m)까지 해안선으로 정의하여 해변의 공공이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해수면에서 100야드(91m)의 범위는 모든 이용행위를 조정하게 되어 여기서는 건물의 건축선 후퇴도 요구되고 있다. 지구에 따라서는 100야드라는 추상적 숫자보다 오히려 경관구획선을 사용하여 해안선의 보전을 실정에 맞추어 규제하고 있다.

그 외에 특별경관지구(Special Design District)가 와이키키의 가라가우아대로, 하와이섬의 히로시 일부, 마우이섬이 라하이나지구 등에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구에서는 매우 자세한 경관디자인이 진행되고 장소에 따라서는 1/50의 입면도까지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의 분담 구분이 상당히 엄격히 이루어져 경관디자인에 의해 공간형태를 실현하는데 공공측과 민간측이 각각 어디까지 분담할 것인가를 사전에 정하고 있다.

#### 4) 연안관리법(Coastal Zone Management Act)

미국의 연안관리법은 해안지역의 부존자원을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미적 가치를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안개발을 도모하고 각 주의 해안지역 관리 프로그램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해안지역의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주체는 주정부이며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는 자발적이고 프로그램에는 연안의 경관관리를 포함하여 해안지역관리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각 주 정부의 개발계획을 심사, 승인하며 정보 및 기술지원을 하고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안지역의 관리프로그램에는 토지이용이나 환경규제를 위한 인허가, 특별한 지역의 종합계획, 용도지역제에 의한 지구분할통제, 매립과 복구, 레크리에이션시설 등에 의한 개발 촉진

9) 나루미 구니히로 저, 김덕삼 외 공역, 도시경관의 형성수법, 대우출판사, 1998, p.54

10) 이은정, 연안의 경관보전을 위한 시각적 차폐도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10의 표를 재인용

11) 나루미 구니히로 저, 김덕삼 외 공역, 도시경관의 형성수법, 대우출판사, 1998, pp.51~53

등이 있으며 주정부마다 지역적 특징에 따라 각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안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에서는 자체 연안관리를 위한 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캘리포니아 연안법(California Coastal Act, 1998)은 캘리포니아주의 1,100마일(1769.9km) 해안선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여기에 연안의 경관관리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연안의 경관과 시각적 질은 공공의 자원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허가된 개발은 바다와 연안의 경관을 따라 조망을 보호하고 자연지형의 개발을 최소화하며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하여 그 지역의 시각적 질을 유지하고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2.3 외국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특성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과 미국의 연안도시에서 시행 중인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일본의 연안의 경관제도는 도시계획측면에서 용도지역제에 의해 지구를 세분화하여 규제하는 수법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고정자산세를 감해주거나 인센티브를 주어 경관을 유도하는 유도적 수법, 그리고 공원사업이나 환경정비사업 등 사업적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일본의 연안 도시에서는 각 도시의 경관조례를 만들어 연안의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는 「입해경관기본축」, 오사카에서는 「경관형성지역」을 지정하고 고베에서는 경관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에 「항만지경관형성계획」을 세워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 ③ 일본의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는 용도지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시의 종합경관계획수립을 통해 각 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안의 경관, 가로경관, 녹지경관, 전통건축물 지역 등 경관유형에 따라 세부지침을 정하고 지구별 경관형성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④ 일본의 연안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관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경관자원 조사계획의 실시, 경관에 관한 심의회 설치, 조례 또는 요강의 제정 등을 통해 경관관리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 ⑤ 미국에서 연안의 경관관리는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디자인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조닝제도라는 토지이용 규제수법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혹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미관 및 디자인의 만족도, 공헌도 등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 ⑥ 미국의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는 지방자치제의 바탕 위에서 각 도시마다 고유한 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지구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경관의 보전과 형성 등의 목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거나 다양한 경관관련법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시에 따라서는 특정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도시 내 물리적 환

경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센티브 조닝(incentive zoning), 성능지역지구제(performance zoning), 특별지역지구제(special zoning) 등을 두고 있다.

### 3. 우리 나라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우리 나라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는 Table 2와 같이 도시계획측면에서 경관관리를 위한 규제를 목적으로 규정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를 통해 육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연안관리측면에서는 연안관리법이나 해양개발기본법 등이 있으나 이들 법에는 연안의 경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에 의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도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에 의해 경관관리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연안의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도시계획분야

연안의 경관관리와 관계된 도시계획분야의 범으로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공원법 등이 있다. 이들 법에 의한 경관관리는 육역을 대상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과 같은 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결정을 통하여 경관·풍경·풍치·미관 등을 보존·보호·보전·관리·유지·조성·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진 용도지역에서 허용행위 및 건축물, 구조물의 형태와 규모를 규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2) 연안관리분야

우리 나라의 연안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제도로서 1999년 8월에 제정된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이 수립되어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의

Table 2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s in Korea

	도시계획분야	연안관리분야	환경보전분야
규제	· 도시계획법 · 건축법 · 도시공원법	· 연안관리법 · 해양개발기본법 · 항만법 · 어항법	· 자연환경보전법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조	· (시)도시계획조례 · (시)건축조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동해시, 제주시 등 연안도시의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	· 창원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 진해시자연경관보전조례 · 마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 · 강원도경관형성조례 · 동해시경관형성조례 · 속초시경관형성조례
심평	· 제주도개발특별법		· 경관영향평가

보전, 이용, 개발에 관해 규정한 국가통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법과 같이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방식이 아닌 계획에 의한 국토관리기법으로 전국의 연안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안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안관리분야에서 연안의 경관관리는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각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정책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in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lan

권역명	현황	정책방향
서해중부-I	·경관 등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 분포	·자연경관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서해중부-II	·과도리 해수욕장 등 자연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보호대책 미흡 ·자연경관이 우수한 무인도서의 체계적인 조사 미비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서해남부-I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도서생태계 훼손 우려 ·변산반도국립공원지역내 건축·신축·개축 제한으로 인해 심미적 가치 저하	·자연경관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자연경관 보호
서해남부-II	·연안개발압력 증대로 인한 갯벌 생태계 및 철새서식환경 훼손 우려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생태계 분포	·생태적·심미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 ·도서지역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호·관리대책 수립·시행
남해서부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생태계에 대한 조사 미비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자연경관·생태계 등에 대한 도서생태계조사 실시
남해중부	·자연해안에 대한 개발압력 가중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 관리 필요 ·4계절 체류형의 대형 해양리조트 개발로 수려한 자연경관지에 대규모 매립이나 시설물이 설치되어 연안경관 훼손	·자연해안의 경관적 가치를 보호 ·자연경관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남해동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해안선이 항만구역으로 지정·관리 ·공단 및 도시개발에 의한 친수 연안공간의 인공시설화	·도시해안형 친수연안공간의 다양화 및 활성화
동해남부	·울릉도의 천혜의 자연경관의 개발로 인한 훼손 ·우수한 연안경관 보유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세부계획수립(연안관리지역 계획) ·울릉도 지역의 자연경관 보전과 연계된 환경친화적인 도서 관광상품의 개발 ·연안의 경관이 양호한 소규모 어항을 관광자원화
동해중부	·무분별한 관광단지 개발에 의한 백사장·해안단애 등 자연경관 훼손	·화진보호·송지호 등 경관이 우수하고 철새서식지로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생태관광지 지정
제주	·도서생태계 보전 필요 ·관광단지 개발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	·자연경관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환경영향평가 및 시뮬레이션 실시로 환경보호

또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는 해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바닷가와 해안도로 사이의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풍치지구·고도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해안 등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연안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내 공작물(건축물 포함)의 설치 등을 제한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3) 환경보전분야

환경보전분야에서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규제 성격의 자연환경보전법과 심의의 성격을 갖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가법 이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법 제 44조 및 제45조에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동해시, 속초시, 창원시, 진해시, 마산시 등은 Table 4와 같이 경관조례를 정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제정하면 자치단체에서 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경관형성조례와 자연경관보전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해안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하고 주변지역과의 연속성 있는 경관형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경관형성계획과 자연경관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연안의 경관보전을 도모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Table 4 Ordinances related to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경관형성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지역	·강원도(2000.6) ·동해시(2001.2) ·속초시(2001.8)	·마산시(1999.6) ·진해시(2000.4) ·창원시(2000.7)
법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	
목적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형성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함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함
기본원칙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해안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형성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관리계획	·경관형성계획 -경관형성의 기본구상 -지역 또는 권역별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이미지 요소별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경관형성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자연경관 기본계획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 -추진시책 및 기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운영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한편 2001년에 각종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법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평가로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며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크다.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도시개발이나 항만건설 시 대상사업 내에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3개의 평가분야에서 23개 항목으로 나누어지며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여기서 경관에 관련된 항목은 생활환경의 평가분야 중에서 위락·경관항목이다.

4) 연안지역의 경관관리제도

우리 나라의 연안지역에서는 최근 자체적으로 도시 및 연안의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천시와 제주도의 사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30조 3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해안·하천·호수 주변의 자연경관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세부적인 규제내용<sup>12)</sup>을 정하고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정비 기본구상(1998)에서는 도시경관을 시가지경관과 연안의 경관의 경관구역별로 나누어 경관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연안의 경관구역은 공공연안의 경관구역, 자연연안의 경관구역, 산업연안의 경관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경관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경관정비 기본구상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제주도는 연안의 경관자원을 중요시 여겨 '재생가능 자원'으로 보고 Table 5와 같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연안의 경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sup>13)</sup>.

4.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개선방안

먼저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를 위한 연안의 범위를 키 맴으로 살펴보면 Fig. 4와 같다. 그러나 연안의 경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는 경관지역별로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정해야 한다.

4.1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현황

- ① 현재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근간은 도시계획법 제33조(지구의 지정)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0조와 제52조에 따라 정한 도시계획조례 제3장 제10조와 31조이다.

Table 5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s in Jeju Island

제 도	내 용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1994년)	· 경관보전계획 -해안선 및 연안지역의 보전(500~1000m) -경관도로 지정 · 건축물의 고도기준설정
제주도 개발특별법 개정 (2000년)	· 국내 최초로 경관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의 경관보전 · 제주도 경관영향평가서 작성·심의 규정은 폐지되어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건축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사가 경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건물의 형태와 색채 등에 대하여 심사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도록 함(제주도에만 인정되는 사항임) · 경관보전지구를 설정하여 각 등급별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도시사가 인정하는 주요 해안선 주변의 1등급으로 지정된 곳에 한하여 시설물설치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농·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이하 -해수욕장 부지내의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높이 5m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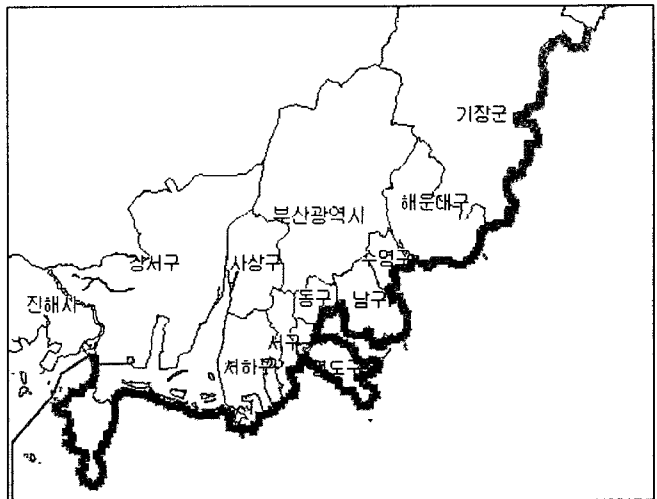


Fig. 4 Key map of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area in Busan

10조에서는 도시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산지경관지구, 연안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나누고, 연안경관지구는 해안변, 수변, 해안가시권지역 등에서 자연의 경관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31조에서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조례31조에서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 제한하고 있음)을 적용하고 있다.

- ② 연안의 경관관리에 관련된 또 다른 제도는 도시계획법

12)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조례 제49조, 제50조에 의하면 건폐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써 높이 17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은 조경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13) 이은정, 해안경관보전을 위한 시각적 차폐도 분석에 관한 연구 : 제주도 해안일주도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생태조경학과 석사논문, 2001.2, p.49

제 42조~제45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 연안의 경우 17개 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해안지역의 경관을 고려하여 해운대구와 수영구에서 정한 미관지구가 Table 6과 같이 6개 포함되어 있다. 이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높이, 형태, 색채, 건축선지정 등을 건축조례로 정해 제한할 수 있다.

- ③ 한편 부산시 도시개발심의관실 자료<sup>14)</sup>에 따르면 부산시는 연안의 기존 우수 경관 2개소(송정 및 광안리 해수욕장변)와 경관 개선이 필요한 6개소(용두산 일원, 동구 부두로, 영도 해양종합공원, 청학동 해변, 남항동 해변, 서구 암남동 일원)를 해안경관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경관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아 전체 연안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 ④ 이밖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1996년에 발간한 「부산발전 그랜드디자인」에서 경관관리지역을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도시축경관, 역사경관 등으로 구분하여 대상별 경관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해양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연안의 경관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4.2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연안의 경관관리를 위한 통합된 법제도가 없이 건설교통부 산하의 도시계획분야, 해양수산부 산하의 연안관리분야, 환경부 산하의 환경보전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법과 평가·심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조적으로 통합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Table 6 Aesthetic districts in Busan Coast

구역명	위 치	면적(m <sup>2</sup> )	구역지정	계획수립
제1구역	해운대구 청사포일원	169,000	2000. 4.14	미관지구
제2구역	해운대구 달맞이길일원	608,802	2000. 4.14	미관지구
제3구역	해운대구 미포선착장일원	66,340	2000. 4.14	미관지구
제4구역	해운대구 그랜드호텔뒷편일원	268,451	2000. 4.14	미관지구
제5구역	해운대구 운촌일원	112,150	2000. 4.14	미관지구
제1구역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일원(수변공원)	96,982	2000. 7. 4	5종미관지구

- ② 도시계획측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도를 통해서는 연안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존의 용도지구는 육역 위주로 규제내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해역을 포함한 연안의 경관을 관리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 ③ 연안관리측면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획일적인 관리가 아닌 연안지역의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나누어서 경관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연안관리법을 기본으로 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지역고유의 경관특성에 맞는 경관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연안관리제도에는 연안의 경관관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④ 환경보전측면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시도가 엿보이지만 아직까지 자연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에 의해 심의를 통한 경관관리방안이 있으나 대부분 평가항목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것이며 경관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족하다<sup>15)</sup>.
- ⑤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 10조에서 정한 연안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경관관리업무는 Table 7과 같이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경관관리는 해당 사업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Table 7 Administrative Organization related to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in Busan

법 명	관리부서	업 무 내 용
도시계획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지정 ·미관·경관·고도지구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지구
도시계획법	도시개발심 의관실	·도시미관, 경관, 친수공간에 관한 사항
연안관리법	항만농수산국 항만정책과	·연안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업 ·공유수면의 공작물 설치 및 점용허가
건축법	건설주택국 건축주택과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건축선지 정, 대지안의 공지·조경 등에 관한 규제 ·문화재 주변의 건축 규제 ·도시설계작성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
옥외광고물 관리법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옥외 광고물 관리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어메니티, 도시미관에 관한 업무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	·도시조경에 관한 종합계획 ·공원,유원지,녹지 종합개발계획

14) 「부산다운 건축」기법개발을 위해 바다를 경관으로 한 건축기법과 도시계획기법 연구검토의 시장지시(2002.7.31)에 대한 「도시경관」관리방안 검토보고서

15) 예를 들어 제주일보(1999.5.2)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5년부터 수려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 15명으로 구성된 제주도경관영향평가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환경영향평가에 통합되어 실시됨에 따라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취급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건축계획이나 미관심의 내용이 삭제되고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 등에 관한 사항만으로 축소되어 경관심의기능이 상실되었다.

4.3 현행 제도 내에서 개선 방안

부산의 현행 경관관리제도 내에서 연안의 경관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부산 연안의 경관을 전체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연안경관 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부산 연안의 경관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②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연안경관지구를 정하고 지구별로 육역과 해역이 포함된 연안의 경관관리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각 지구에 대해서는 연안종합경관계획에 적합한 지구경관조성지침을 만든다.
- ③ 부산시의 건축조례 및 규칙의 개정을 통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연안의 경관심의를 포함하도록 하거나 혹은 경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앞서 정한 연안경관지구 내에서 토지개발이나 건축물 건설 시에 사전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한다.
- ④ 대형 아파트단지, 토목구조물 혹은 항만시설물과 같이 연안의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제도와는 별도로 사업별로 계획안에 대한 연안의 경관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 ⑤ 부산 연안에서 주요 조망점(산복도로나 기타 전망이 좋은 공공장소 등)과 조망대상물(바다, 섬, 역사적 기념물, 산 등)을 설정하고 조망점과 조망대상물을 연결하는 조망코리더를 정하며 조망코리더 내에서 건축물 등의 규제를 통해 조망권을 확보한다.
- ⑥ 해안지역에 개발권이전제도(TDR)나 건물의 벽면후퇴 등으로 공개공지를 창출하면 용적 할증을 해주는 유도정책 등을 도입하고 연안의 경관에 기여한 건축물의 포상제도 등을 도입한다.
- ⑥ 부산시와 각 구청에 (도시 및 연안)경관관리계를 두어 경관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전담하도록 하고 담당자는 경관관리의 전문가로서 양성한다.

4.4 연안의 경관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개선 방향

현재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연안의 경관이 시가지경관의 관점에서 도시계획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연안의 경관은 시가지경관(육역)뿐만 아니라 해역의 범위까지 포함하며 시가지경관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측면에서 만들어진 관리제도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안의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육역과 해역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연안관리차원에서 체계적인 경관관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국토계획 및 관리차원에서 국토의 제3공간이라고 불리는 연안을 관리하기 위해 내륙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법과 대등한 위치의 연안관리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는 장기적으로 연안의 종합적인 관리차원에서 연안관리법을 근간으로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안관리차원에서 연안관리법을 근간으로 한 경관관리제도를 제시하면 Fig. 5와 같다.

- ① 연안의 경관은 연안관리차원에서 연안관리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현재 연안의 경관관리는 도시계획, 연안관리,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각각의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연안의 경관관리 범위(육역과 해역을 통합한 지역)를 고려해 볼 때 연안관리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현재 연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안의 정의<sup>16)</sup>는 경관관리를 고려하여 탄력성 있게 조정해야 할 것이며 연안관리법 내에 연안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②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권역별 연안지역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연안의 경관을 특별히 관리할 목적으로 권역별 연안경관관리지역을 지정한다.
- ③ 부산시에서는 연안관리법을 근거로 연안경관관리조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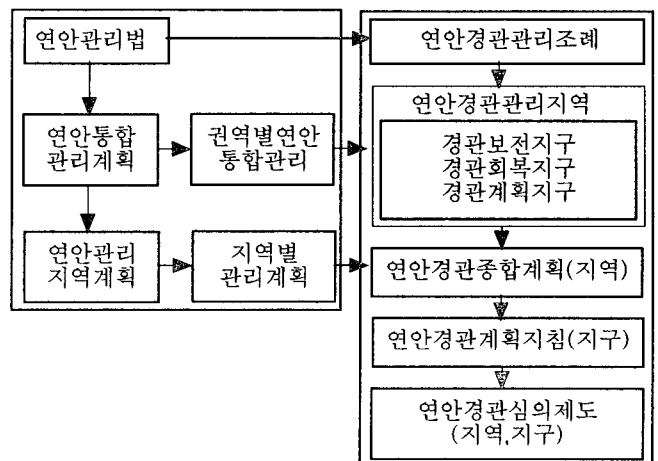


Fig. 5 Proposed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s for Busan coastal area

16) 현재 연안관리법에서는 연안을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으로 구분하고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그리고 연안해역과 육지경계선으로부터 500m(지정항만, 제1,3종 어항 및 산업단지의 경우 1km)범위 안의 육지지역으로, 연안해역은 12해리 이내의 수역과 바닷가로 정의하고 있다.

정하고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연안경관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연안경관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을 연안관리지역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 ④ 부산 연안을 대상으로 정해진 연안경관관리지역 범위 내에서 경관보전지구, 경관회복지구, 경관계획지구를 지정한다. 경관보전지구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고, 경관회복지구는 이미 훼손된 자연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지구이며, 경관계획지구는 향후 연안개발에 따른 경관계획을 세워 새로운 연안의 경관을 창조하기 위해 지정한다.
- ⑤ 연안경관관리지역계획에서 부산의 연안경관관리지역 전체의 경관을 종합 분석하여 연안경관종합계획을 세우고 연안경관종합계획에 따라 각 지구별로 지구경관계획지침을 만든다.
- ⑥ 부산시의 도시심의관실에 연안의 경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항만농수산국의 항만정책과에 연안관리계를 두고 각 자치구에는 도시관리과 안에 연안관리계를 두어 연안의 경관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전문가를 배치한다.
- ⑦ 부산시와 각 자치구에는 연안경관심의위원회를 두고 연안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한다. 경관심의위원회별로 구체적인 심의지침을 마련하여 연안의 경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 ⑧ 부산시 연안경관관리조례에는 주요 조망점과 조망대상을 정하고 이들 사이에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연안관리법에서는 항만시설 계획 시에 반드시 연안경관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한다.

## 5. 결 론

본 연구는 연안의 경관관리를 결과 국내 연안의 경관관리는 경관관리를 위한 통합된 제도 없이 도시계획분야, 연안관리분야, 환경보전분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연구결과 연안의 경관은 육지 경관과 바다 경관이 어우러져 구성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측면에서 보다는 연안관리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안관리법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연안경관관리조례를 만들어 구체적인 연안의 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안의 경관 특성에 따라 연안경관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 경관보전지구, 경관회복지구, 경관계획지구를 두어 지구별로 관리하며 지역의 경관종합계획과 지구별 경관계획지침을 세워야 한다. 또한 부산시와 구청에

서는 연안의 경관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두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연안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해 연안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연안경관관리조례의 제정과 연안경관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안경관현황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덕삼·김경인·김종하 공역, 나루미 구니히로 저, 도시경관의 형성수법, 대우출판사, 1998
-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Ⅲ), 1997
- [3] 서주환·최현상·김상범, '경관계획수법 관련법규의 비교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Vol.28, No.6, pp.96~105, 2001
- [4] 이광국·황영우, 부산 도시하천 경관관리방안-수영강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발전연구원, 1999.2
- [5] 이은정, 해안의 경관보전을 위한 시각적 차폐도 분석에 관한 연구 : 제주도 해안일주도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생태조경학과 석사논문, 2001.2
- [6] 이정형,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디자인심의제도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7 No.8, 2001.8
- [7] 이종현,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정비 기본구상 : 시가지경관 및 해안의 경관을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1998.10
- [8] 이한석, 부산의 연안에서 해안의 경관보전방안, 부산광역시, 2001.4
- [9] 임승빈, '도시경관관리의 개선방안', 건축 Vol.37, No.2, pp.62~65, 1993
- [10] 임승빈,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11] 해양수산부, 연안통합관리계획, 2000.8
- [12] 神戸市, 神戸市都市景観形成基本計画, 1982.7
- [13] 東京都, 東京都景観條例, 1997 <http://www.metro.tokyo.jp>
- [14] 大阪府, 大阪府景観條例, 2000 <http://www.pref.osaka.jp>
- [15] Coastal Zone Management Act, 1972
- [16] California Coastal Act, 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1976
- [17] The City of New York, Zoning Resolution, Department of City Planning, 1993

원고접수일 : 2002년 01월 29일

원고채택일 : 2002년 02월 27일